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FAQ

1. 고시 시행일에 관한 질의		
1-1 (수정)	○ 고시 시행일은 제품의 제조 및 수입일 기준인가요?	○ 해당 고시의 경우 2023년 7월 29일 이후 제조, 수입되는 제품(겉면과 포장에 표시·광고)부터 적용되며 제품명에 한하여 신규(또는 갱신)로 신고·승인받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광고의 경우 2023년 7월 29일 이후 판매 또는 유통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19년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과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표시광고 적용 범위 및 대상에 관한 질의		
2-1 (수정)	○ 표시·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품 설명 이미지, 상품명 등도 표시·광고에 해당하나요?	○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온·오프라인상의 표시·광고 문구 등에 대한 모든 사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 포장은 물론 온라인 상의 제품 설명 이미지, 상품명 등도 표시·광고 문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업명과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 등은 표시·광고 제한 문구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제품명은, 물체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단어 전체를 수식하여 제품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 가능할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 (적합 예시) 그린티 향 ○○제품, 다크그린 ○○제품... (부적절 예시) 그린세정제, 그린(Green)향 방향제...
2-2 (추가)	○ 저는 물건을 직접 제조·수입하지 않고 제조·수입된 제품을 판매만 하는데, 표시광고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 네. 표시·광고의 제한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뿐만 아니라,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3. 제품 포장의 환경성에 관한 질의		
3-1	○ 제품의 환경성 표현이 아닌, 제품 포장에 관련한 환경성 표현의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나요?	○ 생활화학제품 등이 아닌 제품의 포장(포장재 등)에 대한 표시·광고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자연 유래·추출에 관한 질의		
4-1 (수정)	○ “천연유래”, “자연유래”의 경우 성분의 “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로 되어 있는데, “식물유래” 문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요?	○ “식물유래”를 고시에서 표시·광고 제한 문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한문구인 “천연”, “자연유래” 등과 매우 유사하므로 “식물유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물질명, 함유량 등)를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기 바랍니다.
4-2	○ 천연유래 성분이나 자연유래 성분이 복수인 경우(2개 이상) 해당 성분의 총합으로 기재가 가능하나요?	○ 자연 유래 성분의 경우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므로, 성분이 복수인 경우 각각 성분의 물질명과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질의		
5-1	○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문구”는 표시·광고 제한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품에는 사용 가능하나요?	○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문구”는 어린이보호포장 등 제품의 포장에 관한 설명을 나타내는 경우 사용가능합니다. ○ 다만, 어린이보호포장과 관련된 문구가 인체에 위해성이 적거나 없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랍니다.
6.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에 관한 질의		
6-1	○ 현재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의 ‘이와 유사한 표현’의 판단이 모호하여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문구 이외의 문구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 표시·광고 제한 문구 이외에는 사용 가능하나 적법 여부는 「화학제품안전법」과 동 고시를 기반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는 문구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질의		
7-1 (수정)	○ 입증자료가 있다면 '코로나19 사멸', '항균·살균'과 같은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해도 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균·항균과 같은 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은 반드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신고·승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신고·승인된 내용과 일치시켜 표시·광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외에 세탁력 등의 표현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2 (추가)	○ 제품 광고 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구가 있나요?	○ 제품명, 제품의 종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의 효과효능(신고증명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는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